

현 규정

식품 의약품 감독청의 규정
식품 중 중금속 최대 허용량에
관한
2018년 5호
식품 의약품 감독 기관 책임자

제 9 조

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,
식품 의약품 감독청 규정
식품 중 중금속 최대 허용량에 관한 2017년 23호
(인도네시아 공화국 표기 : 2017년 1712호)는
취소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.

제 10 조

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자카르타에서 공포

2018년 05월 22일

식품 중 중금속 최대 허용량

비소(As), 납(Pb), 수은(Hg), 카드뮴(Cd)

식품 카테고리	최대 한도(mg/kg)			
	As	Pb	Hg	Cd
13.2 성장기 유아 및 유아식	0,10	0,10	0,01	0,05

* 인도네시아 식품 카테고리 13.2 성장기 유아 및 유아식은 한국 식품유형 중 조제유류,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에 해당한다.

이전 규정

식품 의약품 감독청의 규정
식품 중 중금속 최대 허용량에
관한
2017년 23호
식품 의약품 감독 기관 책임자

식품 중 중금속 최대 허용량

비소(As), 납(Pb), 수은(Hg), 카드뮴(Cd)

식품 카테고리		최대 한도(mg/kg)			
		As	Pb	Hg	Cd
13.2	성장기 유아 및 유아식	0,02	0,10	0,01	0,02